

# 산업계에 대한 환경정책기조 전환

## -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도입 -

기존의 기업들이 환경규제치  
준수에 그쳤지만 이러한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기업전체의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사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환경목표를 설정,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도모하기위한  
일환으로 환경부가 최근  
도입한 “환경 친화적  
기업경영체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상훈 /  
환경부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관

환경부는 현재 최종처리(end-of-pipe)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환경관리 관행과 정부의 산업계에 대한 환경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생산 전과정에 걸친 환경관리 및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산업계에 이 체제를 보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환경현실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어 기업활동에 따르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그나마 상당부분이 산지여서 가용토지는 한정되어 있으나 과도한 인구로 기본적인 환경여건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최우선의 국가목표로 설정하여 급속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동안 환경부문이 소외되어 그동안 누적되어 온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국가의 기간산업이 화학, 철강, 금속, 전자, 자동차 등 오염부하가 큰 중화학공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의 성장전략 또한 제조업 중심의 대외교역 확대에 기초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환경문제가 가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장래 직면하게 될지 모르는 환경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염부하가 적은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환경부에서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를 보급하고자 하는 두번째 이유는 청정기술(clean technology)의 적용을 포함한 생산 전과정에서의 예방적 환경관리가 사후처리보다 효율적이라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사후처리와 청정기술의 경제성을 비교할 때, 초기단계에서는 일정기간 청정기술에의 투자비용이 사후처리보다 과도하게 나타나지만 일정시점 이후부터는 청정기술에 의한 생산비용이 오히려 저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례로 3M에서는 일찌기 3P(Pollution Prevention Pays)를 내세워 '75~'92년까지 오염물질 감축과 누수량을

줄여 6억 5천만불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도 기업으로 하여금 법정 기준치 이하까지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낼 정책수단이 필요하고, 특히 WTO 체제 출범이후 논의되고 있는 환경상계관세, 생산공정 및 방법(PPMs :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그리고 ISO 14000 series 등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우리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를 산업계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란 기업이 환경규제치 준수에 그치는 기존의 소극적인 환경대응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전체를 망라한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사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적극적 경영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이 체제를 도입한 기업에서는 환경이 기업경영의 한 요소로서 최고경영자는 물론 전직원의 참여하에 제품설계부터 원료투입, 생산 및 오염물질의 최종처리에 이르기까지 사업활동 전과정에서의 환경부하를 엄격히 평가·관리·개선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환경관리체제 구축, 환경성 평가 및 환경개선 계획 세가지이다. 환경관리체제란 기업이 문서화된 환경관리지침을 확보하여 그에 따라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환경보전 기본원칙, 전 조직의 환경관

련 역할과 책임, 교육 및 훈련, 부적합사항 시정 및 예방조치, 내부환경감사,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책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서는 물론 생산부서 등 전조직의 환경관련 역할과 업무절차가 명확히 규정된다. 환경성 평가란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설계부터 원료조달·투입, 생산 및 사후처리까지 사업활동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용수, 유독물질, 에너지 및 원재료등의 투입 규모와 특성, 생산공정 및 공법의 환경영향, 대기·수질·폐기물 등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양, 그리고 방지시설의 종류, 용량, 효율 등이 정량적이거나 정성적으로 평가된다. 환경개선계획은 환경성평가 결과 드러난 문제에 대하여 기업이 스스로 우선순위를 매겨 개선하고자 정한 목표와 그 달성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구체적인 오염저감목표와 달성방법, 투자계획 및 일정 등이 명시된다. 이를테면 환경개선계획에는 '96년까지 '95년 기준으로 폐수를 10% 줄인다거나, 폐기물 재활용률을 10% 제고하는 등의 개선목표가 있을 수 있고, 개선방법으로는 제품설계를 달리하거나 관리개선, 공정개선, 방지시설개선, 또는 현장재이용(on-site recycling) 등을 통할 수 있다.

환경부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우선 기업내에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모범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관리를 수행하면서, 소정의 『환경성평가 및개선계획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이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를 신고로 대체하고,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포상 등 차별적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탁월하게 수행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선별적이거나 각종 규제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여 종래 환경당국이 기업을 부도덕한 환경착취자로 간주하여 적대시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이 환경당국과 기업간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환경부로부터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장단위로 소정의 지정신청서 1부와 환경성평가및개선계획서 20부를 작성하여 환경부 또는 관할 환경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번 제도에서는 신청기간내 따른 마감일이 없이 연중 계속해서 신청을 접수하며, 지정 여부는 최대 50일 동안 심사하여 해당기업에 통지하도록 하였다. 다만 환경부실 기업의 신청남발을 막고, 자숙과 개선의 시간을 둔다는 취지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거나 처벌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의 보급을 계기로 산업계에서 생산단계부터 오염저감노력을 기울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저오염부하형, 환경친화형으로 옮겨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